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	세대주와의 관계		전화번호	처리기간 : 14일 (첫만남이용권,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)	
	주소				휴대전화		전자우편	
가족사항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동거여부	건강상태 (장애/질병)	직장명	전화번호 (집/직장)	
※ 배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사실혼 [] 사실상 이혼)								
본인부담금 환급계좌	지원대상자와의 관계	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	예금주	비고(사유)	
제출처	사회보장급여 내용							
읍면동 주민센터	[] 보육료지원 · 유아학비지원 * 부모급여(보육료) 지원포함	지원대상자	신청구분					
			[] 어린이집(0~2세) 기본 ([] 장애 [] 다문화), [] 어린이집 (0~2세)연장, [] 어린이집 방과후 [] 어린이집 (3~5세) ([] 장애 [] 다문화),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[]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 ([]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		
			[] 어린이집(0~2세) 기본 ([] 장애 [] 다문화), [] 어린이집 (0~2세) 연장, [] 어린이집 방과후 [] 어린이집 (3~5세) ([] 장애 [] 다문화),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[]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 ([]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		
			[] 어린이집(0~2세) 기본 ([] 장애 [] 다문화), [] 어린이집 (0~2세) 연장, [] 어린이집 방과후 [] 어린이집 (3~5세) ([] 장애 [] 다문화),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[] 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 ([]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		
			*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,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(0~2세) 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* 만0~1세 아동은 부모급여(보육료) 자격으로, 어린이집(0~2세)로 신청하면 됩니다. * 만0~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(보육료) 자격 신청 시 차액급여가 지급되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*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, 디딤씨앗계좌(CDA) 또는 입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					
			지원대상자 신청요건(1개 선택)					서비스시간
		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] 중증질환자 [] 희귀난치성질환자 [] 소년소녀가정 [] 조손가정 []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[]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					[] 월 24시간 [] 월 27시간	
		[]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					[] 월 40시간	
	[] 장애인 가족지원 (비장애인) [] 장애인 가족지원 (비장애인)	발달재활 서비스	지원대상자	장애유형	[] 뇌병변장애 [] 청각장애 [] 시각장애 [] 언어장애 [] 지적장애 [] 자폐성장애 [] 미등록 (영유아)			
			장애정도	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[] 미등록				
필수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		[] 언어재활 [] 청능재활 [] 미술심리재활 [] 음악재활 [] 행동재활 [] 놀이심리재활 [] 재활심리 [] 감각발달재활 [] 운동발달재활 [] 심리운동 [] 기타()					
연어발달 지원 (비장애인)		지원대상자						
		필수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[] 언어발달진단 [] 언어재활 [] 기타()					
		장애유형 (부모 또는 조부모)	[] 뇌병변장애 [] 청각장애 [] 시각장애 [] 언어장애 [] 지적장애 [] 자폐성장애					
[] 발달장애인 지원	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	지원대상자	자녀와의 관계			[] 부 [] 모 [] 기타()		
	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[] 지적장애 [] 자폐성장애 [] 미등록(영유아)			장애 정도	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	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[] 지적장애 [] 자폐성장애			장애 정도	[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		지원유형	[] 주간활동서비스 ([] 기본형 [] 확장형) ※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. [] 방과후활동서비스					
[] 지역사회 서비스	지원대상자				서비스명			
	지원대상자				서비스명			
[]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	지원대상자				지원신청	청소년본인 또는 부모, 주양육자 신청가능		
	지원대상자							

[] 장애인활동지원	[] 해당 (※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)	지원대상자			
		신청유형	[] 신규신청 [] 변경신청 [] 갱신신청	[]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	
		활동지원급여 변경신청 사유 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	[] 장애상태의 변화	[] 학교생활	
			[] 직장생활	[] 취약가구	
			[] 독거(1인)가구 (19세 이상)	[] 거주지 이전	
			[]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	[] 조손가정 (19세 미만)	
			[] 한부모가정 (19세 미만)	[] 기타	
		특별지원급여	[] 출산 [] 자립준비 [] 보호자일시부재 ([] 결혼 [] 사망 [] 출산 [] 입원 [] 지역사회보호자) 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		
		지원대상자	출생정보	[] 국외출생	[] 복수국적
		지급방식	[] 바우처(원칙) [] 현금(시설보호 아동 등)		
[] 첫만남이용권 (국민행복카드)	[] BC(은행) [] 삼성 [] 롯데 [] KB국민 [] 신한	보호자(카드 보유자)			
		※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신청자의 경우,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(BC카드를 선택한 경우)을 선택합니다 -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. 		
		지원대상자	출산(예정)일	년 월 일	
		지원 유형	[] 단태아([] 첫째아 [] 둘째아 [] 셋째아 이상), [] 쌍생아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단태아([] 인력1명 [] 인력2명) [] 삼태아 이상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다태아		
보건소 [] · 주민 센터	[] ·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	신청요건	기본 지원대상	[] 자격확인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) [] 소득기준 이하	
			예외 지원 대상 (해당자만)	[]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[]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[]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[]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[] 새터민 산모 [] 결혼이민 가정 [] 미혼모 산모 []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[] 분만 취약지 산모 [] 기타(소득기준 완화 등)	
		서비스 제공 장소	[] 자택 [] 기타		
		지원대상자			
보건소 [] · 주민 센터	[] ·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	지원 유형 (중복 체크가능,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)	기본지원대상	[] 기저귀([] 국기초 [] 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 [] 조제분유([] 산모의 사망·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	확인 (✓ 체크)
			예외지원대상 (지자체자체 사업)	[] 기저귀([] 국기초 [] 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 [] 조제분유([] 산모의 사망·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	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

확인
(✓ 체크)

1. 개인정보 활용 목적

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

2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

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보육료 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,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3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

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

유의사항

확인
(✓ 체크)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,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]

-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,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,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[]

-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, 세대원, 소득재산상태, 근로능력,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 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]

-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[]

추가제출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3.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(해당자에 한함) 4. 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 5.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,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.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,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를 신청합니다.

①	년 월 일
신청인(대리 신청인) 성명 :	(서명 또는 인)
신청인과의 관계 :	(대리 신청의 경우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1) 가족,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(후견인) 등

210mm× 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